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협 2019 - 126호

시행일자 2019. 5. 13.

수 신 김해시장

참 조 분임재무관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내진성능평가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정·보완 요청

---

1. 귀 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청이 「진영 문화체육센터 외 1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견적제출자 참가자격”가 의 ㉯ 항목에 다음 공고 내용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참여업체의 과도한 제한으로 다수 진단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고 내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학력+기술자격+경력+교육으로 산정한 기술자 역량지수(ICEC)에 의하여 이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귀 시청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